

# 제5차 한국DB산업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4. 3. 13.**



한국DB산업협의회

## 제5차 한국DB산업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안자	한국DB산업협회장 손삼수	기록자	박현수 수석연구원
일시	2014년 3월 13일 (목)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의결참여자	손삼수 회장 등 운영위원 22인		

번호	부의안건	회의 결과
제1호	201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원안 통과
제2호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원안 통과
제3호	제규정 개정	원안 통과
제4호	2014년도 연회비	원안 통과

■ 부의안건

1. 『201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 2013년도 한국DB산업협의회 주요 추진 사업 실적
  -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및 회장단회의 개최 (17회)
  - 간담회·세미나·교육 진행 (4회)
  - 우수 DB인 상 시상
  - 체육행사 개최 (5회)
  -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회)
  - 산학 협력(1회)
- 2013년도 예산 집행 결산
  - 수입 : 31,100천원
  - 지출 : 40,662천원
  - 잔액 : - 9,562천원

2.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2014년도 주요 사업 계획
  - 협의회 주요 사업 계획

- 협의회 위상 강화 방안 마련
- 회원 간 교류·친목 도모 강화
- 회원사 역량강화 지원
- 산학 협력 활동 강화
- 국제 협력 기반 마련

○ 분과별 주요 계획

- DB서비스 분과
  - 공개 포럼 운영
  - 정기회의 개최
  - 회원사 확충 및 타 분과 협업 활동 강화
- DB컨설팅 분과
  - 정기회의 및 체육행사
  - 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 국산 데이터 기술도입 확산 간담회
  - DB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 DB솔루션 분과
  - 정기회의 개최 및 산학간 교류 확대
  - DB솔루션 기업 교육 지원 및 신규 인력 채용 지원
  - 국산 DB솔루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홍보 지원

□ 2014년도 예산

- 전체예산 : 42,000천원
- 세부내역
  - 한중DB기술협력포럼 : 12,000천원
  - DB인의 밤 행사개최 : 18,000천원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 7,000천원
  - 회원사 경조사 등 : 5,000천원

3. 『제규정 개정』

□ 정관 개정

○ 수행사업 개정

- DB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협력지원 (신설)
-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 진흥사업 (신설)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운영위원 확대

□ 회원관리규칙 개정

○ 입회신청서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등 삭제

4. 『2014년도 연회비』

□ 2014년 연회비 납부 금액

○ 연회비는 2013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

종류	회원 구분	금 액	비고
연회비	회장사	5,000,000원	
	부회장사	3,000,000원	
	운영위원사	1,000,000원	
	일반회원사	-	
	특별회원	-	

□ 연회비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 3월 17일 ~ 4월 30일 (6주간)
- 납부 방법 : 계좌이체(계산서 발행)

번 호	보고안건	회의 결과
제1호	한국DB산업협의회 회원사 현황	원 안 접 수
제2호	한국DB산업협의회 운영위원사 현황	원 안 접 수

■ 보고안건

1. 『한국DB산업협의회 회원사 현황』

- 기업회원 132개사, 특별회원 18인 등 총 150개 회원 등록

2. 『운영위원사 현황』

○ 신규운영위원사

- 솔루션분과 : (주)그로투, (주)엔씨티, (주)아이비리더스 등 3개사

○ 신규 운영위원사를 포함하여 서비스분과 7개사, 컨설팅분과 7개사, 솔루션분과 13개사 등 27개사

■ 의결현황 및 결과

- 안건 1 : 운영위원 27인 중 총 22인 의결, 참석자 22인 전원찬성
- 안건 2 : 운영위원 27인 중 총 22인 의결, 참석자 22인 전원찬성
- 안건 3 : 운영위원 27인 중 총 22인 의결, 참석자 22인 전원찬성
- 안건 4 : 운영위원 27인 중 총 22인 의결, 참석자 22인 전원찬성
- 정관 제14조 1호 및 제16조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 참석자 명단

분과	기업명	성명	참 여	비고
DB서비스 (7)	(주)케이웨더	김동식	참석	
	(주)누리미디어	최순일	참석	※ 배성진 이사(대참)
	(주)로엔비	안기순	참석	
	(주)시공미디어	박대민	참석	
	(주)웹스	이형철	불참	
	(주)잡코리아	김화수	불참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육재	참석	
DB컨설팅 (7)	(주)아인스에스엔씨	양영진	불참	
	데이터투데이크놀로지(주)	이수철	참석	
	(주)비투엔컨설팅	조광원	참석	
	(주)투이컨설팅	김인현	참석	
	(주)이피아이솔루션즈	서강교	참석	
(주)아이티엑스퍼트그룹	손인근	불참		
(주)트루데이터	이종화	참석		
DB솔루션 (13)	(주)웨어벨리	손삼수	참석	
	(주)위세아이텍	김종현	참석	
	(주)알티베이스	김영철	참석	
	(주)엔코아	이화식	참석	
	(주)와이즈넷	강용성	참석	※ 이석원 본부장(대참)
	(주)큐브리드	정병주	참석	
	(주)티베로	장인수	참석	
	지티원(주)	이수용	불참	
	(주)신시웨이	최연준	참석	※ 김광열 상무(대참)
	(주)비아이매트릭스	배영근	참석	
	(주)그로투	김관호	참석	
	(주)엔써티	오현식	참석	
	(주)아이비리더스	정광천	참석	

- 붙임 : 1. 운영위원 참석확인서  
 2. 개정 정관  
 3. 개정 입회신청서 양식. 끝.

<붙임> 1. 운영위원 참석확인서

2014년 한국DB산업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 확인

<2014. 3.13>

분과	기업명	성명	확인
DB서비스 (7개사)	케이웨더(주)	김동식	
	누리미디어	최순일	
	로엔비	안기순	
	시공미디어	박대민	
	웹스	이형철	
	잡코리아	김화수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육재	
DB컨설팅 (7개사)	아인스에스엔씨	양영진	
	데이터투데이크놀로지(주)	이수철	
	비투엔컨설팅	조광원	
	투이컨설팅	김인현	
	이피아이솔루션즈	서강교	
	아이티엑스퍼트그룹	손인근	
	트루데이터	이종화	
DB솔루션 (13개사)	웨어벨리	손삼수	
	위세아이텍	김종현	
	알티베이스	김영철	
	엔코아	이화식	
	와이즈넷	이석원	
	지티원(주)	이수용	
	큐브리드	정병주	
	티베로	장인수	
	신시웨이	김광열	
	비아이매트릭스	배영근	
	그로투	김관호	
	엔써티	오현식	
	아이비리더스	정광천	

1. 2014년 한국DB산업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확인합니다.  
 2.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정 관

제정 : 2009. 10. 29.  
개정 : 2010. 02. 11.  
2010. 11. 19.  
2011. 11. 17.  
2012. 05. 31.  
2013. 03. 13.  
2014. 03. 13.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한국DB산업협회(Korea DB Industry Association,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민간, 공공 및 학계 간 상호교류를 통해 DB 산업계의 권익보호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DB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의회는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DB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상호교류를 위한 제반 사업
- 나. DB산업 관련 시장조사, 시장 확대 전략, 기술, 법률, 정책 등의 연구 사업
- 다. DB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 연계 지원
- 라. DB산업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마. DB산업 관련 홍보와 광고
- 바. DB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사. DB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협력지원

- 아.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 진흥사업
- 자. 기타 본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협의회는 회원은 기업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구성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업회원 : DB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나. 특별회원 : 학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 ② 본 협의회 회원가입 및 회원 자격에 대한 사안은 회장단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의회 회원은 각종 활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발언권이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② 본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 가.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 나. 총회,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 다. 협의회 활동의 적극 참여의 의무

제8조(회원탈퇴) ① 본 협의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별도 절차에 의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의회 회원은 본 협의회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본 협의회 회의는 총회,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년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나.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기업회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기본 활동방향과 주요 사업
- 나.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 다. 재정에 관한 사항
- 라. 운영위원회가 심의 회부한 사항
- 마. 기타 주요 사항

②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회장단) ①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분과위원회의 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회장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제적 회장단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제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운영위원회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가. 정관의 제정과 개정
- 나. 협의회의 주요 대외, 대내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의결
- 다. 회원의 제명에 대한 의결
- 라. 임시총회 소집 및 안건 회부에 대한 의결
- 마.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의결

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의결

사. 회비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의결

②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의결
- 나.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결
- 다. 분과위원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한 의결
- 라.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가. 분과위원회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나.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제9조에 규정된 각 조직의 의결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17조(의결권의 대리) ①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소속한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의사록) 제9조에 규정된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임원이라 하며 회장단 및 감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 다. 부회장(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 이상 5인 이하
- 라. 운영위원 20인 이상 4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마. 감사 2인 이내
- ② 수석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과 함께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업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협의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의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2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운영위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④ 회장단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⑤ ④항을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⑦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 가. 본 협의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나. 임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다. 본 협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임기) ①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의회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연도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④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한다.

제24조(고문) ① 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협의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 전임회장 및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전임 원장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수입)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된다.

제26조(회비의 징수 및 관리) ①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편성하여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본 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 제6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본 협의회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본 협의회에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장 보 칙

제30조(규칙)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의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본 협의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나 기관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 부 칙<2009.10.29>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09. 10.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최초조직 및 임원) 본 협의회는 최초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준비위원회 재적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본 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 협의회 설립을 위해 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0.02.11>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0. 02. 1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1.19>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0. 11. 1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11.17>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1. 11. 17.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05.31>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2. 05. 3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03.13>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3. 03. 13.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3.13>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2014. 03. 13. 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개정 입회신청서 양식

(별지 2호 서식)

(별지 1호 서식)

## 한국DB산업협의회 입회 신청서

(기업회원)

## 한국DB산업협의회 입회 신청서

(특별회원)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력사업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DB서비스 <input type="checkbox"/> DB컨설팅 <input type="checkbox"/> DB솔루션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			
	업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설립연도	_____년	종업원 수	_____명
	대표 전화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전자우편	@
	주사업장주소			
	홈페이지	http://		
담당자	성명		부서/직급	
	전화번호(직장)		팩스번호	
	전자우편	@	휴대전화	

성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소속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국가 및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기관 주소			
기관 홈페이지	http://		
전화번호(기관)		팩스번호	
전자우편	@	휴대전화	
관심분야	<input type="checkbox"/> 데이터 입력/가공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구축 <input type="checkbox"/> DB분석		
	<input type="checkbox"/> DBMS <input type="checkbox"/> 검색엔진 <input type="checkbox"/> DB보안 S/W		
	<input type="checkbox"/> DB서비스 <input type="checkbox"/> DB유통 및 활용		
	<input type="checkbox"/> DB컨설팅/기획 <input type="checkbox"/> DB인력개발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유지보수		
참여 희망 분과위원회			

상기 본인은 “한국DB산업협의회” 입회를 신청합니다.

상기 기관은 “한국DB산업협의회” 입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기업명 : (직인)

한국DB산업협의회 귀중

한국DB산업협의회 귀중

첨부 : 회사소개서 1부.